

# 2023년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7.(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김연희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7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50건(안전번호 제2023-18877호~19926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8877호~18882호(순번 1번~6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8883호(순번 7번)은 카페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8884호~19926호(순번 8번~1050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5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7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3-81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966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와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12건임.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총 14개 중 9개는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6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블로그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은 대체사이트와 마찬가지로 OSP에서 직접 검색제한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6번은 삭제 및 전송 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에서 제공중인 영상 불법복제물 총 1건이며, 극장판 애니메이션 '○○ ○○○ ○○○-○○

○○ ○○ ○○○ ○○○'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7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특별한 의견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은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 내지 105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1,95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더 글로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0번은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드라마 '더 글로리'임. 2022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드라마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제공중임.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80번은 영화 '샤잠! 신들의 분노'로, 2023. 3. 15.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제공중인 사안임.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620번은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임. 2023. 3. 29. 개봉하여 극장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8번부터 1050번까지 총 1,953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웹소설,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8번부터 105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8877호~19926호(순번 1번~1050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24.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